

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보훈회관  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 월 3 일

여 수 시 장 권 오봉



여수시 조례 제1683호

붙임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683호

##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체결하여야 하며, 공증을 하여야 한다”를 “체결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제7조(협약의 체결 등) ① 시장</u>  <u>은 보훈회관의 관리·운영을 위</u>  <u>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</u>  <u>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</u>  <u>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공증을</u> 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   략)</p> <p>② (생   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 <u>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